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00호, 2021. 6. 8,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패션 스타트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의 정보보안을 위협하는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을 매개하는 자는 정보보호 투자, 인력현황 및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여, 정보보호의 공시를 사업자의 재량에 따른 임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현황공시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2021년 5월 기준 57개의 기업만이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고 있어 공시제도의 실효성도 적은 상황임.

이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200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자로서 사업 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